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및 별지2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1 및 별지2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3, 별지4 및 별지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 2019년 9월 14일
2. 별지1 및 별지2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3.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9월 14일
4.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9월 14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2월 29일

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에 따른 삭제약제 중 “별지 4”의 “베사노이드연질캡슐10밀리그램(트레티노인)_(10mg/1캡슐)(694800050)((주)메디탑)”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